채무 추심을 위해 미국 재무부에 채무 이첩 의향 통지서

제목: 미상환 채무액 채권자:

계정/케이스 번호:

사회보장번호:

수신:

귀하는 에게 채무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본 채무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수당의 초과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본 서신의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아래에 설명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는 귀하의 채무를 미국 재무부로 이첩하여 채무 상계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 TOP)을 통해 추심 처리됩니다. 당 기관은 1982년 채무 추심법(DCA), 1996년 채무 추심 개선법(DCIA) 개정, 관련 식품 및 영양 서비스 규정에 의거해 귀하의 미상환 채무액에 대해 벌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추징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당 기관이 미국 재무부에 이미 제출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 기관은 청구액 및 청구심리권을 포함한 청구에 관해 통보하는 내용 증명서를 우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송하고 이에 필요한 추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채무 상계 프로그램(TOP): 귀하의 채무가 채무 상계 프로그램으로 이첩되면, 미국 재무부는 귀하의 유자격 연방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채무액을 공제하게 되며, 사설 추심 계약자 및 법무부로 채무를 상정하거나 자진 상환 방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채권 추심은 DCA 및 DCIA 의 허가를 받습니다. 채무액이 상계되기 전까지 다른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 2 페이지에 명시된 상환을 위한 연방 지불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귀하는 미국 재무부로 채무가 이첩되기 전에 (1) 당 기관의 채무 관련 기록을 검토 및 복사하고 (2) 본인이 채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요청하고 (3) 적절한 서면 상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신의 별첨에는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TOP 에 의한 채무 상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본 서신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내에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하십시오.

- 채무 상환: 채무 총액에 해당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취인): 앞으로 작성하여 이 페이지의 하단 왼쪽에 있는 채무 상계 프로그램(TOP)의 반송 주소로 우편을 보내십시오.
- 상환 계획에 동의: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카운티 사무소 에 전화번호() 로 연락하고, 당 기관이 인정하는 상환 계획에 동의하고, 상환 계획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 심사 요청: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전액 또는 일부가 납기일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송달하십시오:
 - 귀하의 채무에 관한 당 기관의 결정을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 개인 파산: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추심 자동정지가 발효된 경우, 자동정지가 발효 중인 한 상계 또는 그 외 추심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파산 관련 증빙 서류를 송달하여 자동 정지를 당 기관에 알려주십시오.

고의적인 허위 또는 불성실한 진술이나 발언을 하거나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 청구법(31 U.S.C. 3729-3731) 또는 기타 준거법에 의거 민사 책임을 지거나, 18(U.S.C. 286-287-1001 및 1002, 그 외 준거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또는 계약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후 포기되거나 국가에 채무를 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채무에 대해 귀하가 상환하거나 지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즉시 환급할 것입니다.

카운티 DSS 사무국에 문의하기 전에 두 번째 페이지를 모두 읽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는 별첨 A, 상계 대상 연방 지급금에 관한 세부 정보, 본 청구액이 상계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신 또는 귀하의 권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카운티 사무국으로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카운티 사무소:

주 사회복지과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내에서: 1-800-662-7030 노스캐롤라이나 주 외에서: 1-800-543-0958

청구금 상계를 위한 재무부 이첩 일반 조건:

본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청구금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기회를 가지는 것 이외에, 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정하는 최소 금액 또는 그 이상
- 파산에 의한 자동 정지 상태인 경우는 제외
- 현재 소송 중이지 않은 금액, 및
- 당 기관이 승인하는 수급액 차감 또는 상환 계획을 통해 현재 추심 중이지 않은 금액.

상계 대상 연방 지급금:

- 소득세 공제액을 비롯한 소득세 환급금(추가 정보는 별첨 A 참조)
- 군인 급여를 비롯한 연방 급여의 최대 15%(본 상계 유형에 대한 면제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는 별첨 A 참조)
- 연방 퇴직 연금의 최대 25%
- 군인 연금
- 계약자/공급업체 지급금
- 상계에서 면제되지 않는 특정 대출금을 비롯한 기타 연방 지급금.

매월 연방 지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미국 재무부는 법률에 의거해 특정 연방 월 수당(사회보장퇴직 연금, 유족 및 장애인 수당, 철도 노동자 은퇴 연금(등급 2 제외) 수당, 파트 B 진폐증 환자 수당 등)의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연방 지급금에서 매월 최소 \$750 또는 매년 \$9000을 공제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98년 9월 미국 재무부는 수당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생활보조금(SSI) 장애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별첨 A

공동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및 초과 지급 당시 식품 및 영양 서비스를 받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던 배우자가 공동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 신청 전에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미국 정부에 대한 연체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득세 환급금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논의하십시오.

본인이 연방 정부 직원인 경우: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위에 설명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재 순수 가처분 소득이 상계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TOP에 의거해 연방 급여 또는 월급을 상계하기 시작한 급여 주기부터 채무액, 수수료, 벌금, 기타 과금이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모든 급여 주기 내내 순수 가처분 소득의 최대 15%를 공제합니다.

TOP을 통해 연방 급여 또는 월급을 수령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채무의 존재 또는 금액, 급여 차감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을 통해 연방 급여 또는 월급을 수령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서면 심리 요청서를 제출할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심리 청원서가 적시에 제출되면 연방 급여 및 월급 상계를 위한 상계 개시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연방 지급금에 대한 상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심리(요청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심리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늦어도 60일 내에 결정됩니다(기간은 심리 담당관이 연장할 수 있음).

고의적인 허위 또는 불성실한 진술이나 발언을 하거나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는 연방 직원은 처벌 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